

〈발표논문〉

國際化時代에서의 日本의 法學教育

——東京大學에 있어서의 大學院改革을 中心으로——

石 井 紫 郎*

오늘 서울大學校 法科大學의 새로운 校舎의 落成을 기념하는 韓·中·日國際심포지움에 초대받아 東京大學에 있어서의 最近의 大學院改革에 關係 報告할 榮譽를 베풀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서울大學校 法科大學의 여러분에게 마음으로부터 祝意를 表하는 동시에 우리들 外國으로부터의 參加者에 대해 베풀어 주신 厚意에 深심한 謝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본인에게 주어진 課題는 東京大學 法學部가 2~3年前에 行한 大學院의 改革에 關係 報告하는 것입니다만, 本題에 關係한 여러분의 理解를 돕기 위하여 必要한 한도내에서 그때까지의 東京大學에 있어서의 大學院制度의 概要와 改革의 必要性에 關係한 論議에 대해 약간 要기하도록 하겠습니다.

東京大學에는 10개의 學部(法學部, 醫學部, 工學部, 文學部, 理學部, 農學部, 經濟學部, 敎養學部, 敎育學部, 藥學部)와 12개의 大學院研究科가 있습니다만, 學部和 大學院研究科의 關係는 單순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法學部和 法學政治學研究科는 單一의 組織이 아닙니다. 醫學部和 醫學研究科, 工學部和 工學系研究科의 關係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複雜性은 우선 國家의 敎育制度上, 學部敎育(undergraduate의 敎育)과 大學院敎育은 (동일 大學에 속하는 것이면서도) 각각 別개의 組織이 擔當하는 것으로 定해져 있는 結果입니다. 이것을 東京大學의 경우에 關係 不 同 같으면, 東京大學은 學部敎育을 擔當하는 學部和 大學院敎育을 擔當하는 大學院과는 別개의 組織體制로 되어 있습니다. 法學에 關係 不 同 같으면, 東京大學 法學部和 東京大學 大學院 法學政治學研究科가 別개의 組織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國家의 敎育制度上 定해져 있습니다. 물론, 擔當하는 敎員이 각각 別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各개의 敎員은 大學院과 學部와의 雙方을 擔當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制度上으로는 學部敎授와 大學院敎授를 兼任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 한가지 東京大學에는 學部和 大學院의 關係를 複雜하게 하는 要素가 있습니다. 그것은 東京大學에는 前述한 10개의 學部이외에 13개의 研究所가 있어 그 敎員은 學部の 敎育에는 原則적으로 參加하지 않지만, 大學院敎育에는 參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法學政治學의 경우, 社會科學研究所와 東洋文化研究所의 兩研究所의 敎員가운데 法學政治學에

* 前 東京大學 法學部長

관한 專門的인 敎員이 大學院 法學政治學研究科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하면, 그림 A와 같이 됩니다(뒷면 참조). 學部와 研究所의 레벨에 「本務」라고 쓰여져 있는 것은 大學院에 참가하는 敎員은 각각의 學部·研究所에 본래 속하며, 거기에서의 勤務를 本務로 한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와같이 종래의 大學院制度는 學部·研究所의 일을 각각의 本務로 하는 敎員이 모여 만들어진, 말하자면 兼擔者의 「集合世帶」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大學院에는 固有의 事務組織도 없고 固有의 豫算措置도 강구되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으로는 새로운 學問的·社會的인 發展에 대응한 大學院教育을 責任을 지고 實行해 나가는 體制가 되어 있지 못하다고 하는 反省이 東京大學 전체에 퍼지기 시작한 것이 지금으로부터 10년가량 이전의 일이었습니다.

즉 東京大學에서의 大學院改革의 論議는 각각의 分野에 있어서의 새로운 教育體系라든가 그 내용에 관한 檢討만이 아니라, 이러한 制度的인 問題點을 여하히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도 관련하여 전개되었습니다. 學部·大學院을 「學院」이라고 부르는 하나의 組織으로 한다고 하는 案도 생각되었습니다만, 前述한 바와 같은 國家制度的 짜임새 전체에 관한 改革案인 만큼, 政府(文部省)와의 調整이 難航을 거듭하였습니다.

本人이 有關한 바가 있었던 法學政治學大學院改革은 이와같이 全東京大學의 大學院改革의 將來와 밀접하게 얽히고, 그 試金石이 될런지도 모를 성질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各별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가지 學部內에서의 論議, 東京大學의 學內에서의 意見調整, 文部省과의 折衝 등을 거쳐 우리들이 최종적으로 도달한 새로운 組織의 概念圖가 그림 B입니다만(뒷면 참조), 약간의 설명을 가하자면,

- (1) 大學院法學政治研究科는 固有의 敎員(同研究科의 基幹講座의 擔當者)을 가지며, 固有의 豫算措置를 받는 組織으로 한다.
- (2) 종래, 同研究科에 참가하고 있던 研究所敎員은 協力講座의 擔當者로서 증전대로 大學院教育에 참가한다.
- (3) 法學部는 종래대로 존속하지만, 그 敎員은 모두 大學院敎員을 兼擔한다.

이상과 같은 變化는 一見, 學部와 大學院의 本務와 兼務가 바뀐 것뿐이지 本質的인 變化는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 우선 大學院의 管理·運營에 대해서 責任을 지는 主體가 명확해졌다는 것, 즉 大學院의 「集合世帶」의 性格이 해소됐다고 하는 커다란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學部와 大學院의 管理·運營이 同一한 敎員組織에 의해 담당되므로 兩者間의 有機的인 關係가 보장된다고 하는 것도 커다란 메리트입니다. 學部教育과 大學院教育은 서로 불가분의 關係에 있으며, 양자의 개혁도 一體的인 것으로 추진되지 않으면 아니됩니다. 새로운 組織形態는 그러한 目的에 부응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文部省·大藏省과의 折衝의 결과, 學部·大學院을 종합함으로써 우리들의 豫算이 25% 增額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附言하겠습니다. 본래 우리들은 學部와 함께 大學院에도 固有한 豫算措置를 할 것을 요구했었기 때문에 25% 增額으로는 크게 不滿이지만, 國家의 財政狀況으로 보아 당분간은 이것으로 참을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現在의 狀況입니다.

이러한 改革方式은 東京大學의 他 學部·研究科는 물론, 他 大學에서도 注目되는 바가 되어, 이제까지 東京大學의 理學, 工學, 京都大學의 法學의 세 大學院이 대략 동일한 方式으로 개혁했습니다. 「東京大學法學部方式」은 全國에 선풍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改革의 內容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의 大學院改革의 前史가 약 30년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30년전부터의 懸案問題의 解決과 이번의 大學院改革이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 懸案問題라고 하는 것은 學部教育의 改善입니다. 여러 外國의 法學教育制度와의 比較에서 보더라도 現在의 日本의 大學의 法學教育制度에는 커다란 難點이 있습니다. 그것은 修業年限이 實質的으로 2年 Plus Alpha로 짧기 때문에 충분한 教育을 할 수 없다는 문제입니다. 學生측으로부터 보더라도 一部の 대단히 우수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受講한 授業內容을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消化不良」인 채로 大學을 졸업해 나간다고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東京大學 法學部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이미 30년전에 진지하게 검토하여 修業年數를 1年 연장해야 할 것이라는 結論에 달했습니다. 醫學部の 修業年數도 他 學部보다 2年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改革案은 당시의 政府나 社會의 理解를 얻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日本에서는 法學教育을 高度化할 必要性이 인식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修業年數延長의 必要性은 그 뒤에도 해소되기는 커녕, 반대로 더욱 더 증대하는 성질의 것입니다. 社會의 高度化·複雜化·國際化에 따른 制定法, 判例의 質的·量的 發展에는 현저한 바 있어, 教育內容도 그것에 따라 더욱 증가하고, 또한 學生에게 理解시키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方案을 계속 검토해 왔었으며, 물론 그 가운데는 大學院制度를 活用한다고 하는 選擇肢도 포함되어 있었었습니다. 高度의 法學教育은 大學院(碩士課程)에서 행한다고 하는 생각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당초에는 이것으로 발을 들여 놓기가 주저스러운 事情이 있었던 것입니다.

종래 우리들의 學部에서는 大學院을 오로지 研究者(大學敎員)의 養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왔습니다. 커리큘럼도 그러한 관점에서 짜여져 있었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관점에서 入學者의 선발도 해왔었기 때문에 자연 嚴選主義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法學政治學의 大學敎員이 될만한 素質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者만을 뽑아 大學院에 入學시킨 셈입니다.

다만, 이러한 方針을 취해 왔던 것은 法學政治學과 經濟學의 두 研究科뿐이었고, 다른 研究科에서는 이와는 다른 方針을 취해 왔었습니다. 특히 理科系에서는 科學技術의 高度化가 진행됨에 따라 적어도 碩士課程까지 履修하지 않으면 社會에 나가서도 指導의 地位를 누릴 수 없다고 하는 인식이 정착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法學이나 經濟學의 大學院이 學者養成을 중심으로 생각해 왔던 것은 日本의 官廳이나 企業이 法學部·經濟學部の 卒業生은 기꺼이 채용하지만 大學院修了者는 거의 채용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日本이 法學·經濟學의 碩士나 博士의 學位를 가진 사람의 能力을 평가하고 우대한다고 하는 社會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大學院에 일단 들어가면 大學의 敎員이 되는 길밖에 없는 셈이 되어, 大學측에서도 자연 그것을 전제로 하여 入學者의 選拔을 행하며, 오로지 專門研究者를 양성함을 목표로 하여 教育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적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狀況에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먼저 日本의 官廳이나 企業이 有望한 젊은 職員을 歐美의 大學院에 留學시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최근 그 留學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法學部出身者일지라도 Business School에 留學하는 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습시다만 최근에는 Law School 留學者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企業內部에서의 法務部の 地位上昇이라고 하는 現象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人事部나 營業部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獨立된 Section으로서 法務部를 가지고 있는 會社는 극히 적고, 文書部の 下部機構에 지나지 아니했거나 法務部라고 하는 名稱을 가지는 組織이 전혀 없는 會社도 적지 아니했습니다. 또한 法務부에 근무하는 자는 理致만 잘 따지는 딱딱한 變人(非正常人)이라든가 出世하지 못한다든가, 요컨대 法律을 주물럭거리는 人間은 常識人이 아니라고 하는 image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狀況은 근년 현저히 달라져서, 法務部는 會社에 있어 중요 불가결한 Section이라고 하는 인식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變化의 배경에는 國際化라고 하는 사정이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日常的으로 International한 또는 transnational한 法律問題를 처리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時代가 된 셈입니다. 이러한 變化를 보고 東京大學 法學部는 오랜 懸案인 修業年數延長問題를 大學院의 改革속에서 해결하려는 決斷을 함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주의한 것은 前述한 바와 같이 이제까지의 大學院, 즉 研究者·大學敎員養成을 主眼으로 한 大學院教育은 그 趣旨에 관한 限, 順調롭게 발전해 오고 있다고 하는 實績을 깨뜨리지 아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종래로부터의 사람을 「研究者養成 Course」로 하여 그대로 존치시키고, 그것과 별개의 것으로서 「專修 Course」라고 하는 것을 새로이 발족시킨다고 하는 方針을 취했습니다. 즉, 장래 學者가 될 희망을 가진 사람과 최종적으로는 社會에 나갈 생각이지만 그에 앞서 大學院에서 좀더 공부하고 싶다는

사람과를 별개의 Course의 學生으로서 받아들여, 각각의 目的에 상응한 教育을 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社會人의 再教育(一旦 大學을 나와 官廳・企業에 취직한 사람에 대한 재교육)이라는 社會的 要請도 이 「專修 Course」가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學部로부터 大學院 碩士課程을 일관하는 새로운 法學教育의 시스템構築에 대해서 本人은 社會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說明해 오고 있습니다. 즉, 「이제까지 大學의 法學部를 졸업하는 時點이 「象牙의 塔」에 남는 길과 社會에 나가는 길과의 分岐點이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大學과 社會는 서로 출입할 수 있는 關係에 서게 될 것이다. 「學士」(學部卒業)라고 하는 資格은 「碩士課程」에 들어가기 위한 車票이다. 이 車票를 學部卒業後 바로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就職하여 수년후에 쓸 사람도 있을 것이다. 더 나이를 먹은 뒤에 써도 상관없다. 물론 평생 쓰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 「學士」라고 하는 稱號는 就職하기 위한 車票로 생각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大學院에로의 車票라고 인식한다는 것이다」라고.

大學은 본래 社會의 갖가지 분야가운데서 가장 國際的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學問에는 國境이 없습니다. 물론 韓國의 學者는 韓國의 法을, 中國의 學者는 中國의 法을, 日本의 學者는 日本의 法을 각각 當面의 연구대상으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각각이 閉鎖的인 學問體系를 구축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學問으로서의 언제나 國際的인 學問의 世界에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學者는 比較研究도, 이러한 國際研究集會에서의 討論도 가능한 것입니다. 研究對象인 法 그 자체에는 본래 交流의 可能性은 거의 없습니다. 學問的 研究에 의해 交流可能한 것으로 加工되는 것입니다. An sich한 法이 學問的 加工에 의해 Für sich한 法이 된다고나 할까요. 이러한 學問的 加工을 경유하지 않고 法 그 자체를 移植하려는 것은 暴力이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日本人은 지난날에 있어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本人은 社會와 法의 國際化의 時代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學問的 加工의 重要性을 감안할 때 大學의 法學研究와 法學教育을 社會가 더욱 더 필요로하는 時代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만큼 한층, 大學의 責任은 무거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